

● **환경부고시 제2022-284호**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7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적용하는 반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환경부장관

**2023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**

반영계수는 0.8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